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가단127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2항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4항 기재 부동산의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주민등록번호 1 생략)1)에게 별지 목록 제1항, 2항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4항 기재 부동산의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성대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288㎡
2. [건물] 세종특별자치시 C
벽돌조(연와조) 슬래브 단층 주택 99.58㎡
3.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D 전 1950㎡
4.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E 전 446㎡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능력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나. B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며,

다. 피고는 B의 모친으로 B와 별지 목록 제1항, 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4항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라 합니다)를 한 사람입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3474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데(갑 제1호증 판결, 갑 제2호증 송달확정증명원), 그 금액은 2022. 7. 11. 기준 310,980,624원입니다.

나. B의 부친 망 F는 2017. 2. 28.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위 망인의 처인 피고 및 자녀들인 B, G, H, B가 있으므로, B의 법정상속지분은 11분의 2입니다(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와 2017. 8. 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7. 8.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A는 땅 F로부터 2014. 6. 2. 세종특별자치시 I 답 4035.3㎡ 및 J 답 1478.3 ㎡를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 3. 23. 소외 K에게 581,350,000원에 매각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7호증 1 내지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 B는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상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원상회복 및 그 방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출한 후 각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 536,892,000원(= 203,292,000원 + 333,600,000원)

(1) 상속재산의 가액 : 203,292,000원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	58,723,200원
세종특별자치시 C 건물	28,512,000원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 중 1/2 공유지분	138,937,000원
세종특별자치시 E 토지 중 1/2 공유지분	29,971,000원

세종특별자치시 I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J 토지

※ 법정상속분액

- 피고 : 146,425,090원(= 간주상속재산 536,892,000원 × 법정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습니다)
- B 외 3명 : 각 97,616,727원(= 간주상속재산 536,892,000원 × 법정상속분 2/11)

※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액

- 피고 : -187,174,910원(= 법정상속분액 146,425,090원 - 특별수익 333,600,000원)
- B 외 3명 : 각 97,616,727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고 자녀들인 B 외 3명이 각 1/4씩 상속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는 피고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말소 대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1) 청구취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판결문) 및 갑 제4호(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문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